「20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」소상공인 모집 공고

기업가·장인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「'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의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> 2023년 2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< 수 정 사 항 >

구 분	기 존	변 경	
신청기간	'23. 3. 6(월) ~ '23. 3. 24(금)	'23. 3. 6(월) ~ '23. 4. 5(수)	

사업개요

- □ **사업목적** : 기업가정신, 창의·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·선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
- □ **지원대상** : 기업가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
- □ 지원내용 : 비즈니스모델(BM) 고도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(최대 1억원 한도, 정부 100% 보조)
- □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'23. 12월 31일까지
- □ 지원규모: 350개팀 내외
 - o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으로서, 단계별로 지원규모가 상이 * 신청접수 결과, 신청유형별로도 일부 상이할 수도 있음

● 아이디어 선발 (350개 팀 빌딩)

■ 350개 팀 엄선 및 팀 빌딩

❷ BM 고도화

(105개팀, 최대 6천만원)

-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
- BM 고도화 자금 지원

6) 스케일업

(30개팀, 최대 4천만원)

■ 상위 30개팀 최종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

신청자격 및 요건 2

- □ 신청자격 :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)
 -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 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-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-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 - 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: 5명 미만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o 소상공인 단독* 또는 파트너사*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
 - *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
 - ** 파트너사 모집은 주관기관별로 별도 진행 예정(신청기준은 기관별로 일부 상이)
 - *** 소상공인 단독 신청하고 선정 시, 향후 주관기관에서 희망파트너사 매칭프로그램 지원

소상공인 등을 가진 소상공인

- 기업가정신, 창의·혁신적인 아이템 ↔ - 창작자, 스타트업(창업초기기업), 이업종 소상공인 중 택일

파트너사

□ 신청분야: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* 중복신청 불가

< '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신청유형 >

[1] 라이프스타일 유형

■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

【2】로컬브랜드 유형

■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 (지역대표기업)으로 확장

【3】 글로벌 유형

■ 사업모델을 글로벌(수출 또는 진출)까지 확대

- □ 신청제한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 -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 - ②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❸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 - 4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 -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참고5)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
 - 6 '22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'파이널 오디션' 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

3 기원 내용

□ 사업화 자금 (최대 1억원)

-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, 브랜딩·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(1차 최대 6천만원, 2차 최대 4천만원)
 - *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
- 사업화자금은 업체 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(100%)으로 구성

<사업화자금 지원항목(안)>

집행항목		집 행 내 역	
	개발	■ 신제품 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	
외주 용역비	브랜드	■ 브랜드(CI,BI), 디자인 등 용역비	
	홍보	■ 마케팅·홍보 용역비	
전문가 활용비		■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	
임차비		■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, 장비 임차비	
재료비		■ 신제품개발, 제품/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	
수수료 및 사용료		■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	
		■ 브랜드(CI·BI)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	
		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	

□ 특화프로그램 지원

-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 (멘토링, 브랜딩 등) 등을 활용한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지원
 - * 온·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성 확인과 피보팅(Pivoting) 전략 지원 등

□ 연계·우대 지원

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(창업진흥원) 기수혜 업체가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단계에서 우대 가점(최대 5점)
-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,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 연계 * 혁신형 정책자금(운영비 최대 1억원), 매칭융자(정책자금 최대 5억원)
- '22년도에 파이널(2차)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
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- 강한소상공인 1차오디션 통과 업체의 경우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(최대 1760만원) 신청 시 우대

4 시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3. 3. 6(월) ~ '23. 4. 5(수), 16:00 까지

◆ 신청·접수 마감 유의사항

- 1)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,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 <u>가급적 마감일 2~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</u>
- 2)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- 3)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□ 신청방법 :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공식 누리집(www.2xel.co.kr)에서 온라인 접수

◆ 신청 시, 유의사항

- 1)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**반드시 대표자 본인**이 신청 해야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- 2) 사업 신청 시 신청 유형별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(중복신청 불가)

□ 제출서류 : 해당서류를 원본을 스캔하여 PDF, IPG 등 제출

구분	<u> </u>	제출서류명	서식	비고
	1	사업신청서	서식1	홈페이지
공통	고 트 2 파트너 사 기업 소개서 또는 매칭요청서			작성
00	3	사업자등록증명원	-	호레이지
	4	소상공인확인서 -		홈페이지 업로드
해당	5	(파트너 참여 시) 포토폴리오 또는 회사소개서	-	

◆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1)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
- 2)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
- 3) 소상공인확인서는 '(소기업·소상공인)'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
 - * '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' 인정불가
- **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5일~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(☎ 문의처 :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-3215-2674)

5 명가 및 선정

- □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
 - * 세부적인 평가계획(일정, 평가항목 등)은 <u>각 주관기관별</u>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음

서류평가		발표평가		최종 선정		결과 통보
주관기관 (평가위원회)	→	주관기관 (평가위원회)	→	주관기관 (평가위원회)	→	주관기관
'23. 4월 중순		'23. 4월 중순		'23. 4월 말		'23. 5월 초

- (1단계, 서류평가)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그간의 추진노력도,
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서류평가 실시
 - * 선정규모의 약 2배수 내외(각 기관별로 일부 상이)
- (2단계, 발표평가)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가정신,
 아이템의 창의성, 파트너사 협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(PT) 실시
 - * 발표평가(PT)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
 - ** 평가항목(안) : 정부지원 필요성, 기업가정신, 아이템의 창의성, 협업의 효과성, 성장가능성 등

(3단계, 최종선정)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,
 총 350개 팀(3개 신청유형) 내외 선정

<신청유형별·단계별 선정규모(안)>

구분(신청유형)	[1] 아이디어	【2】BM 고도화	【3】스케일업
라이프스타일	125	40	10
로컬브랜드	125	40	10
글로벌	100	25	10
계	350	105	30

6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- 사업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신청 이후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-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·표절,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
- 공고문, 세부관리기준,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
- 선정된 소상공인은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,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*
 - * 사업비 내 편성 · 집행 불가
-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강한소상공인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*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
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'23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(창업진흥원)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, 중복 선정될 경우 1개 사업을 선택해야 함

□ **문의처**: 강한 소상공인 주관·협력기관 사업담당자

유형	기관명	연락처	이메일
라이프	(주관)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	044-999-0237	gy@ccei.kr
스타일	(협력) 로컬브랜드포럼	070-8866-1202	contact@lbf.or.kr
로컬	(주관) 중소상공인희망재단	070-4261-8383	strong_local@heemangfdn.or.kr
브랜드	(협력)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	064-710-1971	suknam2014@ccei.kr
글로벌	(주관) ㈜엔피프틴파트너스	070-4223-9052	2xel@n15partners.asia

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협업유형 소개

□ 발굴유형(3개)

【1】라이프스타일

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

【2】로컬브랜드

■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 (지역대표기업)으로 확장

【3】글로벌

■ 사업모델을 글로벌(수출 또는 진출)까지 확대

■ **라이프스타일 (○○주단)** 창의적인 **한복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**

* NFT, 버츄얼 유튜버, 메타버스 패션쇼 등을 통해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한국 전통문화 및 브랜드 홍보 극대화



사례

- 로컬브랜드 (○○심당) 제주 감귤을 활용한 티백차 개발 및 제조
 - * 감귤 껍질 내 동백·감귤 꽃을 넣어 우려내는 기법으로 친환경적 이고 건강한 디저트 문화 창조



- 글로벌 (○○○스토어) 해외 소비자를 타겟으로 보드카 믹스제품 출시
 - * 머루, 오미자, 살구 등을 활용한 보드카 믹스제품을 개발, 해외 소비자 대상 판로 개척 및 지속적인 후속제품 출시



□ 협업유형(3개)

【1】소상공인+창작자

- (소) 디자인, 브랜딩, 패 키징 등의 다양한 문제
- (창) 해결방안 제시

[2] 소상공인+스타트업

- (소) 상품기획, 판로 등 사업 운영 애로
- (스) 속도·편의·효율성 제공

[3] 소상공인+이업종

- (소상) 서비스 융합 모델 제안
- (이업종) 제품·굿즈 등의 협업 내용 제시
- 소상공인+스타트업(주식회사○○) '이동형 매트리스 세탁·건조 트럭' 과 '앱 개발자'가 협업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안내해주고 배차 간격 을 줄여주는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발



사례

■ 소상공인+창작자(○○한과) '한과 제조업체'와 '브랜드 디자이너'가 협업하여 한과쇼룸 및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, 브랜드 스토리 및 영상 컨텐츠 제작, 프렌치 한과 연구개발 등 진행



■ 소상공인+이업종 소상공인(주식회사 ○○트론) '레트로 가전제품'과 '쥬얼리 디자이너'가 협업하여 도금 및 주얼리 부착방식을 적용 하여 프리미엄 제품 개발



참고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

□ 사업기간 : '23. 3월 ~ '23. 12월 * 주관기관별로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			
추진단계	추진내용	추진일정(안)	
신청·접수	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 신청·접수 * 홈페이지: www.2xel.co.kr 	′23.3.6. ~ 4.5	
+			
서류평가	•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	'23. 4월 중순	
		(22 49L 5 A	
평가결과 통보 ■	• 서류평가 결과 통보	'23. 4월 중순	
발표평가	•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	'23. 4월 말	
1			
최종평가결과 통보	•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 최종 선정	'23. 5월 초	
+			
팀 매칭데이	• 소상공인-파트너(창작자, 스타트업, 이업종)매칭데이 및 컨셉 고도화	'23. 5월 초	
1			
1차 오디션	•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	'23. 5월 중순	
1			
사업화 지원	•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자금 지원(최대 6천만원)	'23.5월~9월 초	
—			
파이널 오디션	•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	'23. 9월 중순	
1			
사업화 추가지원	• 스케일업(확장) 자금 지원(최대 4천만원)	'23.9월 ~12월	
1			
쇼케이스 대회	• (필요시) 쇼케이스대회 개최(제품홍보, 투자유치)	'23. 11월 중	
I			
사후관리 (후속 지원 등)	• 지원대상자(소상공인) 대상 사후관리 * 투융자 연계, 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, 성과조사 등	′23.12월~	

참고3

23년도 주관기관 지정 현황

【1】라이프스타일 유형: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

* (협력기관) 로컬브랜드포럼

- (주요업무) 지역혁신창업가 발굴·육성 및 성장지원, 창업벤처기업 발굴·성장 지원,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, 창업성장 투자지원
- (주요연혁)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('16.08.)
 - (2019, 04.) 세종창업키움센터 개소
 - (2021, 02.) 로컬크리에이터 거점기관 지정
- (보유 인프라) 메이커 공간, 청년창업지원, 시제품 테스트베드 등 창업지원공간 보유







세종 두레농업 타운

세종창업빌

세종 창업키움센터

【2】로컬브랜드 유형: 중소상공인희망재단 * (협력기관)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

- (주요업무)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, 인큐베이팅(보육), 판로지원 사업 운영
- (주요연혁)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설립('14.02.)
 - * 설립주체: NAVER(500억원 출연)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
 - (2020, 07.) 소진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MOU 체결
 - (2022. 03.) '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협력기관
- (보유 인프라) 소상공인 점프업허브 내 창업지원공간 보유







카페형 전시공간

PC교육장

촬영 스튜디오

【3】글로벌 유형 : ㈜엔피프틴파트너스

- (주요업무) 전문적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팅, 혁신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, 해외 진 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운영
- (주요연혁) ㈜엔피프틴파트너스 설립('18, 05.)
 - *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민간 액셀러레이터 기관
 - (2021.~) 창업진흥원 사내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관
 - (2022, 03.) '22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주관기관
- (보유 인프라)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육성공간 보유







코워킹스페이스

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

시제품 제작 공간

참고4 주관·협력기관 연락처

유형	주관·협력기관	연락처	이메일
라이프	(주관)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	044-999-0237	gy@ccei.kr
스타일	(협력) 로컬브랜드포럼	070-8866-1202	contact@lbf.or.kr
		070-4458-2324	tgchoe@heemangfdn.or.kr
	(주관)중소상공인희망재단	070-4261-8383	leecai@heemangfdn.or.kr
로컬 브랜드		070-4261-8384	dfg4682@heemangfdn.or.kr
		070-4949-2381	sapark@heemangfdn.or.kr
	(협력)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	064-710-1971	suknam2014@ccei.kr
	(엽틱)세구경조경세력선센터 (064-710-1972	yjoo@ccei.kr
글로벌	(주관)㈜엔피프틴파트너스	070-4223-9052	2xel@n15partners.asia

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 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 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3.12.) (4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	
	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은 신청가능	
	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	
	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	
	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	
	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	
75200 7	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	
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	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	
731	수의업	
73904 중	감정평가업	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	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	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	
	보건업	
86	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	
	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	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
91121	골프장 운영업	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	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	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	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	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	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	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	